

「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과 단원의 위·해촉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 임의화(안 제2조제2항)
- 단원 등의 위촉기간 단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)
- 조문 제목 및 해촉 요건 변경(안 제6조)
-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 의무화(안 제12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
 - 「지방공무원법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단원의 위·해촉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제1항에서 단원의 위촉기간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의 위촉만료기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6조에서는 당연해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단원의 일탈행위 징계 시 주관적 판단 개입을 방지하고, 명문화된 기준인 「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」 준용하여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.